

고 시

●법무부고시제2018-85호

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9일

법 무 부 장 관

한국명	생년월일	성별	외국국적	등록기준지	한국국적 상실일	상실사유
김병수	1986.09.22	남	뉴질랜드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405-18	2000.03.07	외국국적취득
주영은	1978.12.30	여	미 국	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-3	2000.12.30	국적선택불이행
산전정자	1961.01.24	여	일 본	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959	2009.05.28	외국국적취득
김다원	1990.01.11	여	영 국	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2길 35	2017.04.27	외국국적취득
박은정	1982.08.21	여	파라과이	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54	2009.06.25	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
이지안	2016.01.21	남	베 트 남	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270-106	2017.09.28	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
박명준	1981.02.09	여	미 국	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 46	2003.02.09	국적선택불이행
안수진	2015.05.03	여	한 국	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전촌길 27	2016.10.11	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
김강준	1966.01.22	남	일 본	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09	1975.07.25	외국국적취득
이태희	1952.01.03	여	미 국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-2	2014.09.16	외국국적취득
딩글재이김	2002.02.25	남	호주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88-29	2002.04.24	외국국적취득

●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-63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

1. 개정 배경

- (주)현대자동차의 “코나 전기자동차”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,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전문기관(에너지공단)을 통해 심의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고속전기자동차의 요건을 만족

2. 주요 내용

- (주)현대자동차의 “코나 전기자동차”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

< 개정(안) >

현 행	개정(안)
제4조(기술적 세부사항)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7.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	제4조(기술적 세부사항)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7.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, 코나 전기자동차

※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/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